

인천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가합54657(본소), 2019가합56837(반소) 판결
[공사대금 · 지체상금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 28 선고 2020나11429(본소), 2020나11436(반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가합5465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변론 종결2020. 3. 13.

판결 선고2020. 3.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6,181,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3.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0,644,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76,181,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3.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55,696,783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13.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평택시 C 외 2필지에 D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공사대금을 평당 3,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6. 7. 12.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12,785,861,000원[공급가액 12,650,000,000원, 부가가치세 135,861,000원(과세비율 10.74%)]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계약사항을 변경하였다(변경된

계약사항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8. 지체상금률: 일일 계약액의 1/1,000로 한다(단, 계약액의 10%를 넘지 아니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 [공사기간]

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제27조 [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 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6. 7. 29.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8. 4. 18.경 암반 돌출로 인한 24일의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였고, 2018. 8. 13.경 원고의 18일(폭염으로 인한 8일 + 자재 수급으로 인한 10일)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8일의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10.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접수하였고, 2018. 10. 1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 소방내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등을 포함한 추가공사비를 합계 372,184,000원으로 하고 추가공사대금 정산은 잔금 정산 후 1개월 이내에 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2.까지 피고로부터 기존 공사대금 12,785,861,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합의된 추가공사대금 372,184,000원과 그중 10.74%에 해당하는 39,972,56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997,256원을 합한 376,181,256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된 추가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 청구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에 관하여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합의는 그 과정, 내용, 형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사계약과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토대로 하면서 원고가 공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대금의 수액만을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약정(과세비율 10.74%에 관하여 별도 지급)이 추가공사대금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합의의 공사비 증가내역에 관한 항목과 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증액 공사비는 위 과세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공사대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72,184,000원과 그 10.74%에 해당하는 39,972,56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997,256원을 합한 376,181,256원과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인 2019. 1. 2.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2. 3.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공사를 준공기한인 2018. 7. 28.까지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 준공기한 다음 날인 2018. 7. 29.부터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8. 10. 11.까지 75일에서 암반 돌출 및 폭염 등의 사유로 연장해 준 32일을 제외한 43일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555,696,783원[전체 공사대금 12,923,181,147원(계약금액 12,785,861,000원 + 부가가치세 137,320,147원) × 1/1,000 × 43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고, 원고가 그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6. 7. 29. 공사를 착공하고서도 그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완성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즉,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날인 2018. 7. 30.부터 완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8. 7. 29.부터 기산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와 준공기한을 2018. 9. 30.로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2) 지체상금의 종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은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의 종기는 위 공사의 완공일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2018. 9. 10.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접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적어도 사용승인신청 접수일에는 사용승인이 가능할 정도로 건물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완성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용승인신청 접수일인 2018. 9. 10.이 지체상금의 종기가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날을 준공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6. 9.

2.경 원고가 준공기한 내에 사용승인까지 완료하는 책임준공을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므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날을 지체상금의 종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공사계약의 문언에 의하면 완공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날까지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지체상금 액수의 산정 결국 지체상금 발생 기간은 2018. 7. 30.부터 위 사용승인신청 접수일인 2018. 9. 10.까지이므로, 지체일수는 43일이 된다. 여기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지체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32일을 빼면 11일이 지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하면 140,644,471원(계약금액 12,785,861,000원1) × 1/1,000 × 11일)이 된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공사기간 중 ① 소방내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된 20일, ② 폭염으로 연장한 공사기간 8일 이외에도 계속된 폭염으로 인하여 지연된 최소 6일, ③ 공사현장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조명 자재 단종으로 지연된 10일의 준공 지연, ④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한 지연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 관한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10 내지 12호증, 제14호증, 제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E, F의 각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주장 사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의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체상금 포기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140,644,471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5. 3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판사구세희

판사유동균

1) 피고는 지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공사대금이 계약금액 12,785,861,000원에 부가가치세 137,320,147원을 더한 12,923,181,147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2016. 7. 12.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2,785,861,000원[공급가액 12,650,000,000원, 부가가치세 135,861,000원(과세비율 10.74%)]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사대금 12,785,861,000원에는 부가가치세액이 이미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